#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7

발의연월일: 2020. 6. 11.

발 의 자:권인숙·강준현·고영인

김경만 · 김상희 · 김영호

김홍걸 · 남인순 · 노웅래

서삼석 · 송옥주 · 안호영

위성곤 • 유정주 • 윤미향

이규민 • 이병훈 • 이용선

이용우 • 이정문 • 이타희

인재근 · 장혜영 · 정춘숙

정필모 • 진선미 • 진성준

천준호 • 한정애 • 한준호

허 영・홍성국・홍정민

의원(33인)

## 제안이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에 접근해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시작으로 아동·청소 년을 성착취한 사건이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 ·권유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 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를 처 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러한 성적 목적의 유인·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성매수 등 심각한 성착취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죄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구체화하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성적 목적의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 행위·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및 제13조제2항).
- 나.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 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 등에 접근하고, 위장된 신 분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획득하는 방법 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 거나 아동·청소년을 성적 목적의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 나.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아동·청 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 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한 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제3항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수사를 할 수 있다.
  - 1.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는 것
  - 2. 위장된 신분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획득하는 것
  -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되 수사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4의2."아동・청소년대상 성적
	<u>유인·권유행위"란 다음 각</u>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행위를 말한다.</u>
	<u>가.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u>
	<u>·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u>
	<u>대화를 하거나 아동·청소</u>
	<u>년을 성적 목적의 대화에</u>
	참여시키는 행위
	나.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
	록 아동・청소년을 유인・
	권유하는 행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
	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
는 행위 등) ① (생 략)	는 행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 1년 이하의 <u>징역 또는 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 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대상 성적 유인ㆍ권유 행위를 한 자
  -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 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 항ㆍ제3항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 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 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 른 수사를 할 수 있다.
    - 1.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 (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

- 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게 접근하는 것
- 2. 위장된 신분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획득하는 것
-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되 수사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 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